

기업의 PL대책

□ 기업의 PL대책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제품안전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상의 결함예방대책, 제조상의 결함예방대책, 주의·경고표시상의 결함예방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PL대책에 관하여 기업이 보다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후의 사후처리보다도 미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즉, 제품안전(PS:Product Safety)대책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PS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다고 해도 PL사고발생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방어대책을 강구해 두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PL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PL대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에 요구되는 PLP 대책이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PS)이며, 이는 제품의 기획·설계·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나서 폐기되기까지 제품 수명주기동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확실한 피해구제대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품안전대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유통·사용이라는 시간적 흐름과 제품특성에 입각해서 사전·사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설계 시 주의사항

- 1) 기획·입안단계에서의 대책 : 사용처의 PL환경조사 철저 ⇒ 제품안전에 관한 기술수준 및 사고사례 조사 ⇒ PL사고예방을 위한 판매관리방침 결정 ⇒ 제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수준확보 ⇒ 폐기기에 따른 안전성확보

L i a b i l i t y

(PLP) 전략

- 2) 개발 · 설계단계에서의 대책 : 제품안전설계의 실시 ⇒ 제품의 안전수준 설정 ⇒ 제품사용 방법의 예측
⇒ 위험성의 예측 ⇒ 위험성의 배제 ⇒ 안전성의 확인 ⇒ 안전성검토내용의 기록, 보관

2. 제조상의 주의사항

현행 품질관리 활동을 향상시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를 다시 점검해 보고,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변경, 원재료 · 부품에 관한 변경 등은 반드시 품질관리 · 설계기술부문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준의 적정화와 검사기술의 향상, 검사작업의 자동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표시상의 주의사항

- 1) 경고라벨 : 제품에 부착된 경고라벨은 제품의 유통, 설치, 사용, 보관, 보수, 폐기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제품의 사용자, 소유자, 수송 · 보관 · 설치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용, 목적외 사용, 접근 · 접촉 등을 포함한 예측 가능한 모든 사용에 있어서 대상자가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OEM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설계를 한 주체가 경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계약상의 책임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2) 취급설명서 : 취급설명서에도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품의 성능, 기능에 관한 사항보다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합니다.